

##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1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

### 2. 제정이유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사항(시행 2024. 4. 25.)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, 전문감사관의 원활한 수요 확보를 위해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(안 제3조제1항)
- 나. 전문감사관의 연임 제한 규정 완화함(안 제5조제3항)
- 다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### 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4년 10월 31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)
 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주택과(우 10932)
  - 전화 : 031-940-4715 / 팩스 031-940-4759 / 이메일 [wprkfrlf@korea.kr](mailto:wprkfrlf@korea.kr)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